

수 신 : 회원제위

참 조 :

제 목 :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관련 찬성의견 개선 요청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해당 입법예고는 해체 허가신청서 일괄 작성 및 감리자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사 여러분의 찬성 의견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공 고 : 국토교통부 제2026-501호 및 제2026-502호('26.4.10)

나. 개정안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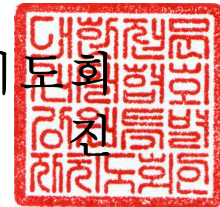
-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 및 제출 허용(시행령안 제21조제7항)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 허용(시행령안 제22조제4항)
-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)

다. 의견제출

- 국토교통부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- 정책자료 - 법령정보
- 입법예고·행정예고 - “건축물관리법”조례 - 의견등록
- ※ 입법예고기간 ‘26.5.20(수)까지

- 붙임 1.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(제2026-501호)
2.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(제2026-502호)
3. 찬성의견 개선방법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
회 장 오 성



담당 경영지원부장 유제연 기획관리실장 이을예

시행 전건협 강원 제 352 호 (2026. 5. 8)

우 243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/ gangwon.kosca.or.kr

전화 033-254-4324 전송 033-257-4324 / 전자우편 kosca32@kosca.or.kr